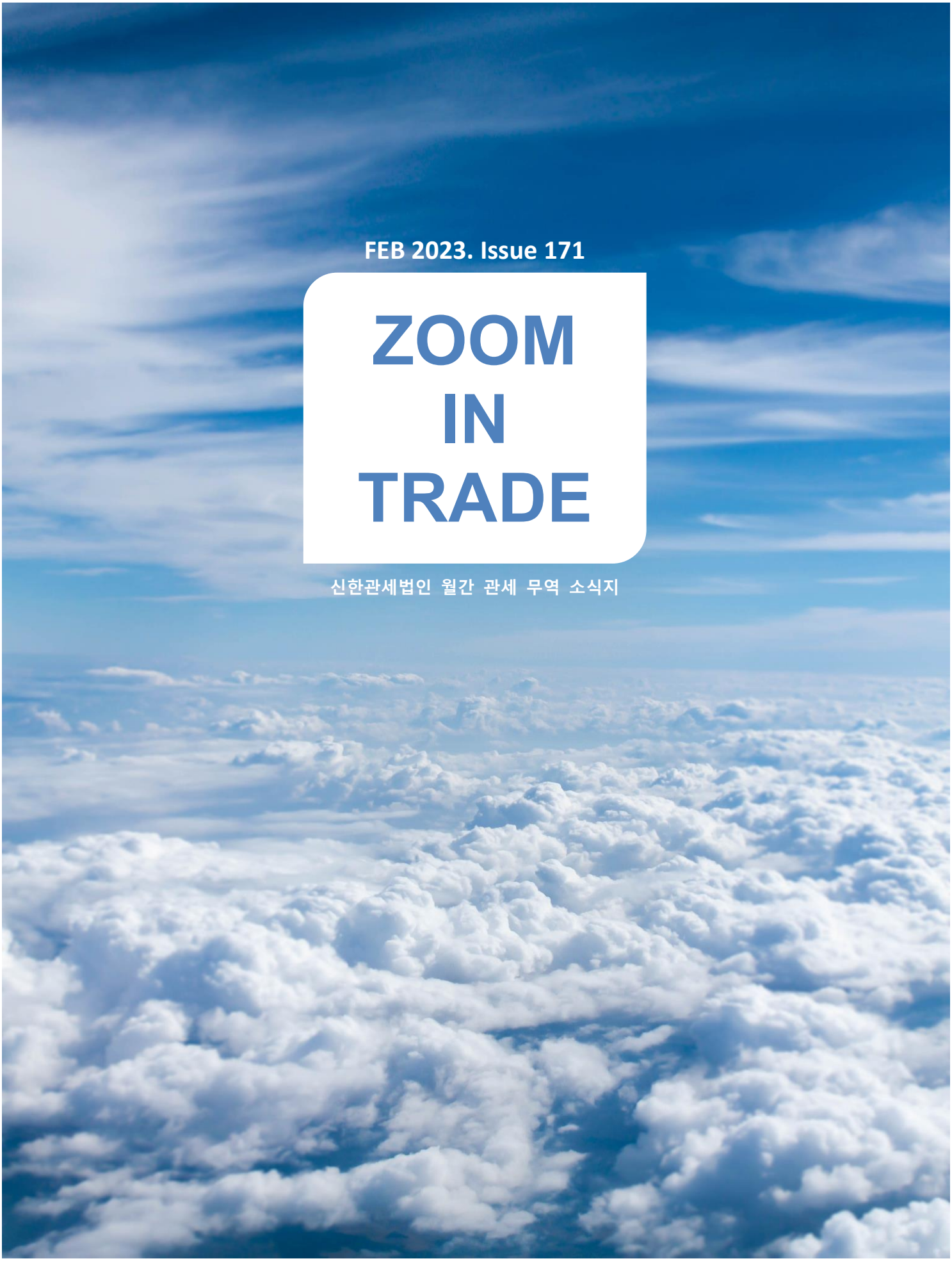

FEB 2023. Issue 171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지진 2023*

The New Customs Study

06 … HS 코드와 수학의 비교

최신 관세 판례 분석

10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논리로 푸는 HS 사례

14 … VIDEO RECORDER EYEWE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Global Customs Insight

18 … EPE가 국내기업에 장비 임대를 할 때에 과세정책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1 … 세관장확인대상고시 개정예정안내 및 적극적인 요건 준비 당부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4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지진 2023*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기도와 위로와 위문주머니를 보냅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에는 지각과 맨틀을 포함하는 암석권(lithosphere) 혹은 판(plate)이라는 약 100km의 단단한 층이 있습니다. 이 두툼한 계란껍질 같은 고체층은 유동적 성질의 연약권(asthenosphere) 위에서 맞물려 움직이며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이 현상들 중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지진파(seismic waves)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 시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한 해에 약 50만건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지진계에 의해 관측되는 지진이고 실제 인간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지진은 약 10만건 입니다. 감사하게도 지진의 규모와 발생빈도는 반비례합니다. 규모 4이상의 비교적 작은 지진이 규모 5이상의 지진보다 10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진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재해와 달리 대비를 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 영향도 매우 다양합니다. 땅의 흔들림과 균열, 지질의 액화, 화재, 홍수, 쓰나미, 산사태 등등으로 인간에게 큰 폐해를 끼칩니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피해를 일으킨 지진은 1556년 1월 발생한 중국 Shaanxi 지진입니다. 83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토언덕에 구멍을 깎아 만든 주거지가 산사태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지진피해도 1976년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3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Tangshan 지진입니다. 규모 7.6의 심각한 지진이라 해도 인명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주요한 단층선 위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대비없이 허술하게 지어진 벽돌건물들의 붕괴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문제였습니다.**

*이번 달 The New Customs Study는 **'HS 코드와 수학의 비교'**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VIDEO RECORDER EYEWE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EPE가 국내기업에 장비 임대를 할 때에 과세정책'** 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세관장확인대상고시 개정예정안내 및 적극적인 요건 준비 당부'**,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입니다.*

2023년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규모 7.5를 비롯한 9천여차례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며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국의 총사망자 수는 5만명을 넘어섰고 60만명 이상이 재난 지역에서 대피하며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새벽시간에 발생한 지진으로 잠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 400만채에 이릅니다. 완전 붕괴된 건물만도 튀르키예에서 6000여채, 시리아에서 500여채에 이릅니다. 붕괴된 건물들은 지진의 위험에 대비하여 지어진 건축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건축물을 위한 내진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Tangshan 지진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

인류의 역사에서 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가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불가항력적 요소를 가진 자연 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예측할 수 있고 경감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인명피해라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비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1995년에 발생한 일본의 고베대지진은 규모가 7.3 이었습니다. 69만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981년 건축기준법의 건축물 내진기준에 따라 지어진 건물은 약 80%가 경미한 피해에 그쳤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파, 붕괴된 건축물은 불과 1%였습니다. 반면 1980년 이전의 건축물은 약 80%가 피해를 보았으며, 대파, 붕괴 등의 막대한 피해를 받은 건물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지구의 자체 내부에너지로 발생하는 지진의 최대규모는 9.5 입니다. 규모 10을 넘는 거대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로는 발생하기 힘들고, 운석이나 소행성의 충돌시에 발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성에는 1년에 수십번씩 소행성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소행성들이 목성의 저지선을 뚫고 지구로 온다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 충돌 에너지는 규모 13이상의 지진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생물체의 멸종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행성의 충돌이나 대규모 지진은 발생 가능한 재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쓴다 해도 거대한 판(plate)의 움직임을 저지할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허블 망원경에 눈을 데고 우주를 쏘아본다 해도 지구를 지켜주는 목성에게 감사의 미소 조차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기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건물들이 내진 기준을 충실히 지키며 건축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유해한 쓰레기가 실려오지 않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낄끼빠빠'라고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신뢰를 갖고 맡기자'로 풀어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기도와 위로와 위문주머니를 보냅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https://ko.wikipedia.org/wiki/지진,,https://en.wikipedia.org/wiki/Earthquake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A7%84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megathrust_earthquakes https://en.wikipedia.org/wiki/1976_Tangshan_earthquake
https://namu.wiki/w/판구조론, **https://namu.wiki/w/지진

***[네이버 지식백과]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 自然災害]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https://ko.wikipedia.org/wiki/효고현_남부_지진 https://ko.wikipedia.org/wiki/ 2023년_튀르키예-시리아_지진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The New Customs Study

HS 코드와 수학의 비교

20년간 수천번을 보고도 발견하지 못한 HS 코드 오류를 수출국에서 통보했다. 그제서야 발견하고 수입자에게는 추징과 가산세는 당연한 것이지만 세관은 신고 수리만 담당하므로 스쳐 지나치는 것일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 어려운 HS 코드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수학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드는데 측정과 설계, 제작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HS 코드는 세상의 어떤 물건이든 12000개 숫자 중 하나로 정해진다. 이에 HS 코드의 특징과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학에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

서 영 진
전무/관세사
wedi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1. HS 코드가 수학과 비슷한 점

1.1 수학은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있다. HS 코드도 커피, 컴퓨터, 피아노, 가방, 쌀. 닭고기처럼 완제품은 찾기가 쉬운데 소재, 원재료, 부분품, 복합제품, 신제품은 찾기 어렵다.

1.2 수학은 방정식부터 함수, 확률, 통계, 미분, 적분, 기하, 벡터와 같이 초급부터 심화까지 학습에 수년이 걸린다. HS 코드도 물리, 화학, 전기, 전자, 에너지, 바이오, 기계 등 기초학문과 컴퓨터, 발전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화장품, 직물, 금속과 같은 물품지식을 오래동안 학습하고 HS 규정을 이해하고, 많은 분류경험을 가져야 하므로 수년이 소요된다.

1.3 아무리 어려운 수학문제도 답을 보면 문제가 쉽게 느껴진다. HS 코드도 물품 이해와 규정 접목에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물품이라도 하나의 코드가 결정되고 나면 쉽게 느껴진다.

1.4 수학의 정답은 대개 하나이다. HS 코드도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의 번호를 정해야 하고 둘은 존재하지 않는다.

1.5 수학문제를 풀다 보면, 오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HS 코드도 수출자가 제공한 물품정보가 부족하거나 HS 규정에 모호함이 있으면 잘못 분류하거나 아예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지만 잘못 분류한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기도 어렵다.

1.6 수학문제를 잘못 출제하면 전원 정답으로 처리한다. HS 코드를 관세청이 잘못 결정하면 변경고시를 통해 과거 결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

2. HS 코드가 수학과 다른 점

2.1 수학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정답지가 있는데, HS 코드는 수출국세관, 수출회사, 수입국세관, 수입회사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있다.

2.2 수학문제를 잘못 풀어서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 HS 코드를 맞추지 못하면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2.3 수학문제를 푸는 것은 학생이고,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수학선생이다. HS 코드를 찾는 것은 수입자와 관세사인데, 세관은 수입신고단계에서 HS코드 확인을 HS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검사공무원이 담당한다.

2.4 수학은 수학을 전공한 선생이 정답을 평가한다. HS코드는 전공자가 많지 않고 순환보직에 의해 담당자가 된다. 마치 국어선생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2.5 수학문제는 수업시간에 학생과 선생이 정답을 인정해야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HS 코드는 수입자가 찾아서 신고하고, 세관은 수입통관시간에는 스쳐 지나간다. 추후에 틀린 것으로 발견된 HS 코드에는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2.6 수학문제는 수학전공자들이 모여 문제와 정답을 결정하는데, HS코드는 HS 전문가보다는 마치 학교 운영위원회처럼 간부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3. HS 코드를 수학에 비유하면서 제도개선을 이야기해 본다.

3.1 **[대학 전공교수 배출]** 세상의 모든 물건은 HS 코드가 부여되어야 국제거래가 되고, 수입요건, 수출통제, 관세율과 특혜세율, 원산지결정, 관세정책, 비관세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많이 가르치고, 전공 대학교수가 나와야 한다. 유수 대학에 세법교수는 많은데 HS 코드 전공 교수는 없다.

3.2 [**HS코드 신고납부제도 보완]** 물건의 HS 코드가 잘 못 분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HS과목을 학습하고도 실제 물품에 대해 번호를 찾는 것은 세관에서 퇴직한 사람도 부담을 느낀다. 세관에서 공표하지 않은 HS코드에 대한 오분류가 발견될 경우 추징은 하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경감해야 한다. HS 코드의 사후검증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고, 가산세도 내국세 가산세보다 낮았던 관세가산세가 2013년에 같은 수준으로 된 이후에 변동이 없다. 관세와 내국세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는 행정의 오판이 낳은 결과이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알아보자)

3.3 **[조세심판원 HS심판부 설치]** 조세심판원의 HS 불복처리는 수입검사나 HS 분류실무를 하지 않은 HS 전문성이 없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세법전공자, 고위직출신자가 처리하고 있다. WCO HS위원회처럼 HS 전문가가 안건을 작성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고위직이 아니라 전문가가 해야 한다.

3.4 **[관세청 HS위원회 개편]** 관세청 HS위원회는 쟁점 HS품목에 대한 HS코드결정이 주요 업무이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세원심사과장, 중앙분석소장, 평가분류원장, 서울, 인천, 부산 심사국장이 공무원 구성원이고 민간위원들로는 관세사, 시민단체, 여성단체, 정부산하기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마치 HS 정책을 다루는 의사결정기구와 같이 보인다. HS 코드를 분류하는 HS실무위원회에 고위직 공무원과 민간인이 정책을 결정하듯 HS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개편을 해야 한다. 관세청의 최고수장이 직접 문제점을 인식하고 챙겨야 한다.

4. WCO HS 위원회 위원장을 우리나라 공무원이 수년간 담당했듯이 HS 코드 결정은 HS 코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 공무원이WCO의 HS 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며 HS개정과 국가간 쟁점HS에 대한 최종 HS코드를 결정했다. 2023년 현재도 우리나라 공무원 출신 담당자가 WCO HS 사무국에서 회의를 준비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HS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조세심판원이나 행정법원이 HS코드 분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니 관세청 HS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거의 없다. 관세청 HS 위원회가 HS코드 전문가가 아닌 고위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으니 그 위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잘못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납세자는 그 이후 불복과정 중에도 전문가에 의한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세청 HS 위원회의 결정 이후 후속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불복과정 중 이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HS코드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는 번복의 여지가 없는 결정에 곤란을 겪고 있다. 관세청 HS위원회 위원을 HS전문가로 교체하고, 조세심판원은 HS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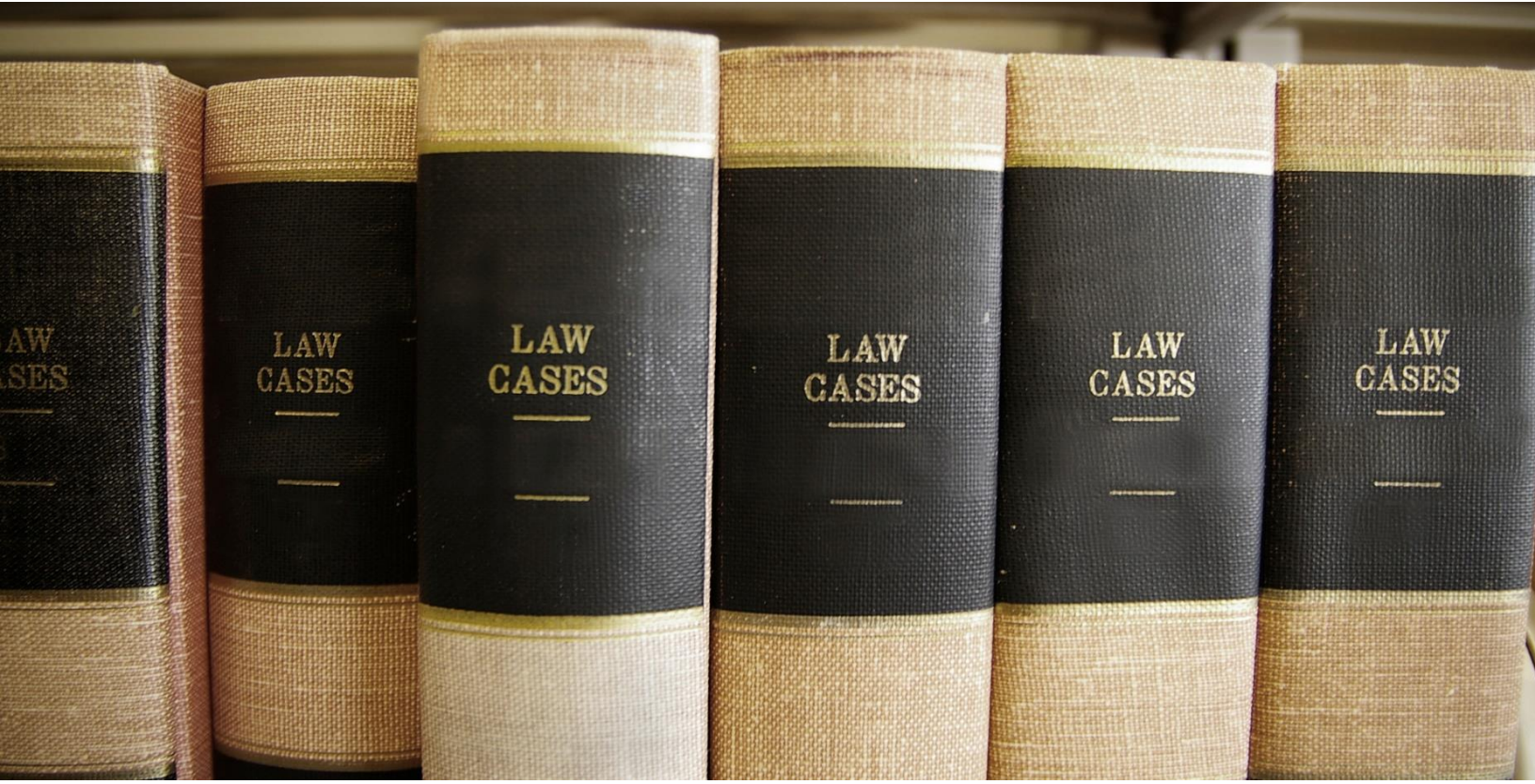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에 따라 그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하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김 학 현
관세사
hh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컨설팅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구매계약에 의해 결정되었고, 쟁점판매자는 계약서 상의 단가로 쟁점물품을 수출하였으며, 물품대금 또한 계약된 금액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되었고 더불어 선급금을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는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어 문제없는 가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구매계약의 계약물량 중 일부를 쟁점 외 물품으로 2회에 걸쳐 수입신고하였고 동일시기에 입항한 쟁점 외 물품 중 일부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사전세액심사가 비과세 종결된 점을 들어 본 건 처분이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수입자가 2020.7.17.부터 2020.8.31.까지 쟁점물품과 모델규격 및 표준표명규격이 일치하는 식용 신선마늘을 수입신고하여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를 받았고 쟁점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쟁점 외 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쟁점 외 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은 적법·타당하고 주장합니다.

처분청은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자, 쟁점물품의 원가표의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v 증빙서류 및 심사대상물품과 관련한 회계장부 등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장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작성된 회계장부로 볼 수 없고 계약체결 취지에 대한 경위서 외에

그 외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결정한 과정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외의 업체가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선마늘을 수입한 실적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쟁점물품의 심사기간은 2020.7.27.부터 2020.9.14.까지이고, 2021.2.24.에 관세조사가 완료되어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입마늘은 2021.6.3. 심사가 완료되어, 2021.6.7.에 수입신고 수리되었는 바, 해당 수입마늘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은 이 건 처분 당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합니다.

3. 심리 및 판단

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쟁점물품 및 쟁점외물품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입항하였는데, 단지 수입신고 시기나 관세조사 시기에 따라서 쟁점 외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을 부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 외 수입자의 수입마늘이나 쟁점외물품은 쟁점물품과 규격 등이 모두 동일하고 같은 시기에 입항하였으므로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건 처분 당시 쟁점외물품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외 수입자의 수입마늘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단지 관세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 당시 적어도 쟁점 외 수입자 수입마늘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고,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과 유사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사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에 대해 세관이 의심을 가지는 경우 수입신고 전 세액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세가격 결정의 증명이 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농산물과 광물과 같은 1차 생산품의 경우 가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건의 심판청구의 판단은 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이 불인정되어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유사물품의 범위를 넓혀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물품을 통한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가격 외에도 수입신고된 유사물품의 가격을 확인하여 유리한 과세가격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VIDEO RECORDER EYEWE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최근 코로나 시대의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여행, 스포츠 등의 취미 활동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활동의 증가로 다양한 기록을 위하여 녹화가 되는 선글라스(안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Video Recoreder Eyewear는 두 손에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치보다 편의성이 높아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사항에서는 Video Recoreder Eyewear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여, 관련 품목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 하 나
관세사
hnlee@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2. 품목분류 사례

(1) 변경고시 전 품목분류: 제 9004.10-9000호

- 물품설명

선글라스 형태의 안경에 동영상 또는 스틸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기로서 렌즈에 무광처리가 되어 있고, 100% UV 차단이 가능하며 내 온도성 및 충격방지 기능이 부가된 안경.

- 결정사유

본 제품은 제8525호의 디지털카메라 또는 디지털레코더의 기능과 제9004호의 선글라스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나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선글라스의 기본적인 형태와 기능에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부가적으로 부여한 기기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자외선 등을 차단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에 있음

관세율표 제9004호의 용어에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된다. 보호용 안경에는 선글라스..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글라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호 나, 1호(90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04.10-9000호에 분류함.

(2) 변경고시 후 품목분류 : 제 8525.89-1000호

- 물품 설명

웨어러블(wearable)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얼굴에 착용하는 선글라스에 디지털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로폰 등이 내장되어 있는 전자기기. 촬영한 사진 등은 저장하거나 유·무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 가능함.

- 결정 사유

설계의도 등을 고려시 선글라스 기능보다는 '디지털 카메라'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형태에 부합되므로 제8525.89-1000호로 분류.

본건 물품은 기기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대신하고자 개발된 웨어러블(wearable)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안경처럼 쓰고 다니다가 원하는 장면이 있으면 영상을 찍어 기기에 저장하고, 필요시 소설 네트워크(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고자 개발된 물품이므로, 제9004호의 선글라스보다는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관세율표 제8525호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가, 제8525.89호에는 '기타의 것'이 분류되며, HSK 8525.89-1000호에는 '초소형 특수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 소품이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또는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일상 소품인 선글라스에 초소형 디지털 카메라가 부착된 형태이므로, HSK 8525.89-100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소형 특수카메라' 범위에 부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초소형 특수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 소품이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9-1000호에 분류함

3. 분류검토

본 고시 이전에는 Video Recorder Eyewear의 주기능이 눈을 보호하는 안경 또는 선글라스라는 것에 주목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안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안경이 해당되는 제9004.10-9000호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촬영, 저장 및 공유 등의 기능을 위하여 개발된 물품의 경우 선글라스나 안경보다는 디지털 카메라에 주용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초소형 특수카메라로 보아 제8525.89-1000호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4. 요건

제8525.89-1000호에 해당하는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경우 수입 시 전파법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가 필요한 세관장 확인대상 입니다. 다만, 디지털카메라, PC카메라, CCTV 카메라, NETWORK 카메라가 아니라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Global Customs Insight

EPE가 국내기업에 장비 임대를 할 때에 과세정책

그 동안 EPE가 그들의 장비를 국내기업에 임대를 하는 경우, 통관절차나 과세정책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관된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 기업에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관총국에서 이러한 경우의 통관절차와 과세정책에 대한 공문을 발표함에 따라, 장비를 임대-임차하는 EPE와 국내기업들의 수행 절차에 기준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문에 따르면, 장비를 임대해주는 목적이 EPE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정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E가 국내기업에 어떠한 목적으로 장비를 임대를 해주는지에 따라 과세 및 통관 정책이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박 성 현
팀장/관세사
sh.park@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C/O 발급
- 수출입 통관

1. EPE가 그들의 ERC(사업자등록증) 범위 내의 EPE 제조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EPE의 장비를 임대를 하는 경우

1) 통관절차

EPE는 일시 수출신고를, 국내 기업은 일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국내 기업은 재수출을, EPE는 재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관세) 국내기업은 일시 수입을 할 때에 '임대비용과 운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관세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재수출 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일시 수입, 재수출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계약이 종료된 후 국내기업이 재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수입 CD를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물품이 재수출 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처리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EPE가 자신의 제조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EPE는 해당 장비에 대해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CD를 만들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세안 중국 FTA C/O 소급발급

베트남 세관총국(GDC)은 아세안-중국 FTA C/O(FORM E)의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상에 "소급발급" 표기와 관련해서 수입통관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공표하였습니다.

선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이후 Form E가 발급되는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정의 모든 회원국은 논의를 통해 선적일로부터 3일을 계산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차이가 FTA C/O의 유효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3일이 경과했는지 계산에 너무 치 중하여, 소급발급 문구 표기 여부에 따라 FTA C/O 자체의 유효성을 부인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Form B 발급 시 HS 버전의 기재

2023년 2월 10일, MOIT는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비특혜 C/O(Form B)의 HS 기재와 관련한 공문 48/XNK-XXHH 를 공표, 하달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Form B에 어느 버전의 HS를 기재해야 하는지 별도의 지침이 없었으나, 본 지침에 따라 Form B 발행 시 HS 2017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HS 2022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규정인 Decree 31/2018/ND-CP 제16조 제1항에 따라 HS2017에 추가하여 HS 2022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PE가 재수입하는 경우의 관세 정책

베트남 세관총국(GDC)은 2023년 2월, EPE가 재수입하는 경우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EPE가 수출입세법에 따른 Free trade zone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에서 EPE로 수입하거나 EPE가 해외나 다른 Free trade zone에 수출할 때에 수출입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PE 기업이 수리, 재활용(Recycle)을 위하여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CD 유형은 "G13"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세관장확인대상고시 개정예정안내 및 적극적인 요건 준비 당부

수입식품, 수입화장품, 수입전자기기, 수입의약품 등 일상생활에서 수입물품은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물론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세관장확인(요건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생략물품(대외무역법시행령 제 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 면제물품,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AEO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 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 승인 그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 ('요건신청')을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수출입 요건- 세관장확인고시 별표1, 2)

차 미 정
팀장/ 관세사
mjch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세관장 확인대상 주요물품

법률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약사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물방역법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안전확인대상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화장품법	화장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전파법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해당물품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23년 2월 7일『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세관장확인 고시 또는 요건고시)』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가 있었으며, 제출되는 의견을 토대로, 빠르면 3월 중순부터 변경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의료기기 세관장 확인대상 추가

치과위생용 제품류(3306.90-2000), 플라스터를 기본재료로 한 치과 치료용 조제품(3407.00-3000), 시력교정용 렌즈(9001.50-1000), 레이저기기(9013.20-0000-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반도체 레이저 수술기)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9006.30-0000) 등

2)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대상 품목 반영

의류관리기•일체형 세탁건조기(8421.12-0000)추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 구성품에 한정한다)•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 구성품으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8507.60-3000) 추가, 무선스피커시스템 (8518.40-0000, 8518.50-0000) 등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사례 반영하여 전파법 대상 추가

전동킥보드•전동휠 (8711.60-1000), 전기자전거 (8711.60-9000), 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이륜/외륜 보드 (8711.60-1000), 이륜자전거(8711.60-9000) 등

4) 화학물질관리법 의거 금지물질 등 세관장 확인 대상 지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2939.80-9000)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808.92-9000)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930.90-5080)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

5) 식물방역법 대상 추가

목재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10-0000, 4414.90-0000), 관(棺4421.20-0000) 등

세관장확인대상은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이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인지하고 준비하여야 통관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및 물리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적기에 국내의 사용자에 안전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예정인 물품의 요건사항에 대해 전문가인 관세사에 충분한 상담 및 자문을 통해 법규준수 및 법적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홍 정 화
관세사
jhho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주요 개정 내용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제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ㅇ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매년 4월,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

-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첨부:신구대조표·통관규제영향 분석서·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ㅇ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별표 2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약사법」 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별표 2 개정)

ㅇ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349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5개 법령 25개 품목 추가, 434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별표 3 개정)

ㅇ「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추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2조·제7조·제9조·제10조 개정)

ㅇ 타법령 ⇒ 다른 법령 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3. 의견

세관장확인대상의 확인은 수출입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해 이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제품에 따라, 세부 규격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인지 여부가 다르므로 수출입자는 수출입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수출입 통관 이전에 허가, 승인 등을 갖추어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www.ftagateway.co.kr
www.customsservice.co.kr

통권 171호 | 발행일 2023년 2월 28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김승훈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6
Tel 02-3448-1181 Fax 02-540-2323